

농촌태양광 금융지원 관련 Q&A

Q :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농촌태양광사업은 농업인의 태양광사업 참여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농촌태양광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장기저리융자)을 통해 태양광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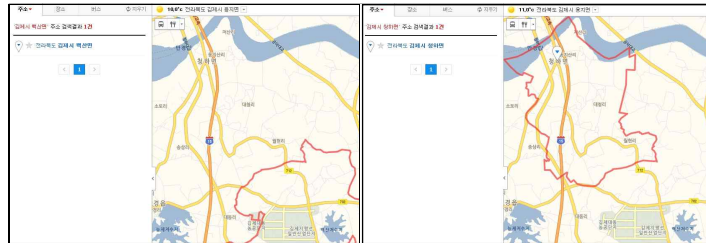
A : 신청자(농업인·어업인·축산인)는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읍·면·동 내 또는 연결한 읍·면·동에 설치하거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금융지원을 신청하면 서류검토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 축산인은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에 설치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연접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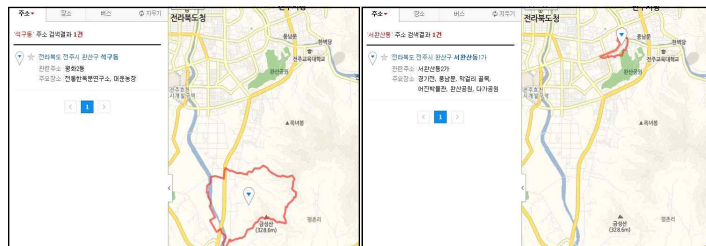
A : 읍·면·동 간의 경계선이 맞닿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① 연접 인정



발전소소재지(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주민등록지(전라북도 김제시 청하면)

② 연접 불인정



발전소소재지(전라북도 전주시 석구동) 주민등록지(전라북도 전주시 서완산동)

Q :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A :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금융지원 신청자의 성명과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업인은 어업인확인서, 축산인은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처>

농업인확인서 : 전국 128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

어업인확인서 :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114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032-880-6114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650-6000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055-981-5000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033-520-6000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63-441-2223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280-1700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054-242-1812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031-683-0313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052-228-5500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041-660-7700
- 제주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

축산업허가(등록)증 : 관할 지자체에 문의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Q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비율) 시공업체와의 설치계약서 상의 금액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90%이내(90%이하가 될 수 있음)로 추천
 (이자율) 분기별 변동금리로 현재('19. 1/4분기)는 1.75%

Q : 공고가 마감됐다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A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당해 연도에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단, 전년도 10월1일 이후 진행된 사업(시공업체 계약일자 기준)은 다음해 공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2018년 9월30일에 계약된 사업은 2019년 공고에 지원불가, 2018년 10월1일에 계약된 사업은 2019년 공고에 지원가능.

Q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상의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공고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서 다운로드)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정책 → 금융지원 → (하단)관련서식자료 다운로드 → 금융지원사업안내서 참조

Q :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A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참여기업(그린홈 홈페이지 참조)으로 선정된 업체리스트를 참고하시되, 발전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라면 가능합니다.(반드시 참여기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여러 업체를 비교 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Q : 담보가 필요한가요?

A : 추천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후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담보설정 및 대출 승인 이후 인출이 가능하오니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 : 평가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사업의 준비성, 사업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평가표 양식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에너지공단과 대역약정을 체결한 17개 금융기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가능 합니다.(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산은캐피탈)

※ 단 농협은행 외 지역농협에서도 가능하며, 지역수협은 불가

Q :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서 류	발급기관
각 서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정책 → 금융지원 → (하단)관련자료서식 다운로드
계약서 (전년도 10월1일 이후 작성 분)	시공업체와 작성
시설명세서	시공업체와 작성
사업자등록증	관할 세무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용자금 대출심사가능 확인서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정책 → 금융지원 → (하단)관련자료서식 다운로드
부지(또는 건물)관련 확인서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 소유일 경우 : 등기부등본 2. 임대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소유주 인감증명서, 소유주 등기부등본
발전사업허가증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용량 기준에 따라 시청(군청) 또는 도청
개발행위허가서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공작물축조 관련 서류를 제출(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농업인확인서(어업인확인서, 축산업등록증)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어업인확인서 : 지방해양수산청 축산업등록증 : 시청(군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관할 주민센터 (축산업등록증에 기재된 축사에 설치 시 미제출)
보급량 산출근거	신청자 작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설비 공기업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사업자도 제출필요)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정책 → 금융지원 → (하단)관련자료서식 다운로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청(개인사업자는 해당없음)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축사 또는 건물위물 설치시 제출
(태양광 사업) 보험 또는 공제증서 (금융기관에 완료 보고 시 제출)	5억이상 설비 : 기존 보험사(금융기관) 이용 소규모 태양광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과 5개 보험사(http://www.solarins.co.kr , Tel : 1522-5159)를 통해 가입 가능

※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관할 도에서 조례로 정한 용량 이상은 도청에서, 미만은 시청 또는 군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경기(200kW), 강원(100kW), 충북(100kW), 충남(500kW), 전북(100kW), 전남(1,000kW), 경북(1,500kW), 경남(300kW) 등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1장2절에서 정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마련한 조례에 따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